산재근로자 참사랑대출

참조링크, 금리 업데이트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POLON0060&cc=c010528:c010531;c012425: c012399&PLM_PDCD=P020006529&PRD_CD=P020006529&HOST_PRD_CD=2001136200000#t ab-cont-2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과 협약된 대출

대출종류

신용대출,일반직장인대출,일반/기타,서민금융

대출대상

근로복지공단(융자결정기관)의 대출승인통보를 받은 고객

대출기간

자금용도별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은 하단 참조

대출한도

융자결정기관(근로복지공단)에 의해서 확정된 금액

개요

근로복지공단과 협약된 대출

특징

산재근로자 및 자녀 학자금,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출상품

대출대상

- 근로복지공단(융자결정기관)의 대출승인통보를 받은 고객
 - ①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근로복지공단)
 - ② 산재근로자 및 자녀 학자금(근로복지공단)
 -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금액

• 융자결정기관(근로복지공단)에 의해서 확정된 금액(만원미만 절사)

대출기간

- 자금용도별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안내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 ① 1년거치, 거치 후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② 2년거치, 거치 후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③ 3년거치, 거치 후 2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산재근로자 및 자녀 학자금 대출 : 졸업 후 1년까지 거치, 거치 후 4년간 매월 원금균등 분할 상환

기본금리

- ①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 연 1.00% (근로복지공단 협약금리)
- ② 산재근로자 및 자녀 학자금 대출 (신규취급 중단): 거치기간 연 1.0% / 상환기간 연 2.0%
 - 최고금리(연체이자율포함): 연 12%.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 ※ 대출실행일로 부터 익월 또는 일정기간 거치후 만기일까지 분할하여 상환
 - ※ 분할상환내역은 근로복지공단 보증서별로 상이하니, 근로복지공단의 상품내용 참조부탁 드립니다.

담보

• 근로복지공단 발행 보증서 담보대출

대출신청기간

- 대출실행 가능시간 : (평일) 09:00~22:00 / (토.일.공휴일 실행불가)
- 이자조회 및 납입 / 원금상환 :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고객부담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세(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별 차등납부
 - ※ 5천만원 이하: 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각각 3만5천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각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35만원(각각 17만5 천원)
- 근로복지공단 보증료(고객부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연 1.0%), 산재근로자가정 학자금 대출(연 0.3%)
 - ※ 대출실행시(대출금입금시) 대출금액에서 보증료를 차감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 ※ 보증료는 대출만기일까지 계산하며, 대출 신규 취급시에 일시 납부합니다.
 - ※ 보증료율 책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합니다.
 - 대출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상품

거래제한

• 금융권 연체대출금 보유자, 신용도판단정보등록 등 특정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 내부 심사기준에 의하여 대출불가합니다.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은 비대면채널에서 대출 진행 불가합니다.

대부사업 상세정보

-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바로가기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이자 계산방법

- 여신금리(이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 할인료, 보증료는 대출원금 및 보증액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 지로 한다.(한편넣기)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이자 일수 ÷ 365 (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

※ 정책자금대출, 외부기관 협약대출,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상기내용과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분할상환대출: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 1개월) 단위로 후취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 할 수 있으므로,
 -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계약갱신 : 분할상환대출은 기간연장 불가 합니다.

연체이자 부과

(지연배상금)

등 처리방법

- 지연배상금(연체이율의 적용): 대출금리 + 3% (최고 연12%)
-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 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 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 체이자를 납부하셔야합니다.

④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 시에는 지연된 분할

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된「가계대출 상품설명서」및「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이익에 관한 사항

- ※대출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 이자율이 적용되며, 신용도 하락 및 예금 등 기타 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불이 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①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 거래시 불이익 발생가능
- ③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 ④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기타 유의사항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우리은행의 심사기준, 신용도, 거래실적, 상품별 취급조건 등에 따라 고객님의 대출가능여부, 대출금액, 대출금리등이 결정됩니다.
- 만기도래 시 거래실적, 신용등급,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 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 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 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①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②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③위법계약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주1)}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단, 계약체 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또는 거절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1)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항,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 ④자료열람요구권 : 본 상품은 자료열람요구권 신청이 가능하며, 요구한 날로부터 6영업일이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및 서비스는 우리은행의 여신정책, 제휴사 및 협약업체 등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중단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대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자세한 거래조건 및 내용은 대출신청 영업점 담당자 또는 고객센터(1588-5000, 1599-5000)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